

라면의 진실

국내 라면의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여전히 높아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라면을 조사한 결과 포화지방 함량은 1봉에 6.3~9.1g 수준으로 제품별 최대 1.4배 차이이고 평균 7.7g으로 1일 영양소기준치 15g의 51.3%를 차지해 라면을 1일 2봉 이상 섭취하거나,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동물성 지방 함유 식품 등을 함께 섭취할 경우 포화지방과 다 섭취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포화지방의 과다 섭취는 지방간 위험을 높이고,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증가시켜 심혈관계 질환 및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에 한국소비자원은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 등 4개 업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자 설문조사를 진행해 12개를 선정했다. 조사 대상 제품 중 농심 '안성탕면'의 포화지방 함량이 9.1g으로 가장 많았고,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과 '스넥면 쇠고기맛'이 각각 8.9%, 8.6%로 뒤를 이었다.

또한 12종의 나트륨 함량은 1봉에 1350mg~2069

한국소비자원 성분 조사

한봉지 나트륨 하루 권장량의 87%

응답자 60%, 주 1~2회 라면 섭취

안성탕면 포화지방, 진라면 나트륨 '최다'

과다섭취시 성인병 유발...저감 노력 필요

mg 수준으로 조사됐고, 평균 함량 1729mg은 1일 영양소기준치 2000mg의 86.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이 1860mg, 팔도 '꼬꼬면'이 1810mg으로 나트륨 함량 상위 제품에 속했다.

또한 기존 삼양식품 '삼양라면'은 1960mg, 농심 '신라면'은 1930mg으로 가장 높은 나트륨 함량을 기록했지만, 올해 리뉴얼을 거쳐 각각 1840mg, 1790mg

으로 낮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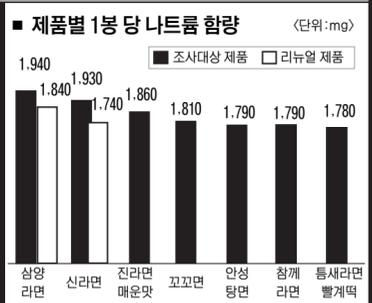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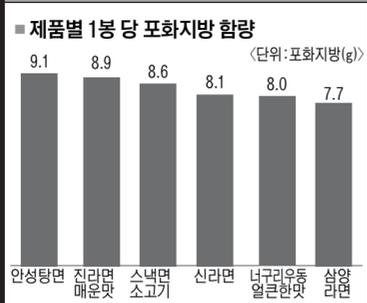
이와 함께 라면 1봉지의 열량은 473.0kcal~549.6kcal로 나타났고,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때 1봉의 평균 영양소 섭취량은 한 끼 영양소 기준치 대비 단백질 56.3%, 탄수화물 71.6%, 지방 97.6%를 차지했다.

모든 제품에서 영양성분은 표시기준에 적합했지만, 오뚜기 '참깨라면'의 건더기스프 중 '고소함참깨 계란블락'의 내용량(6.6g)이 표시량(5g)의 132%로 나타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한편 설문 응답자의 59.9%가 주 1회~2회 정도 라면을 섭취하고, 56.7%가 매운맛을 가장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라면업계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포화지방 함량이 적고, 불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대체유 사용과 함께 제품의 지속적인 나트륨 저감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국물을 적게 먹거나 스프를 적게 넣어 조리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카드 결제 뒤 제품 불량... '청약철회·항변권' 활용하세요

7일 이내 거래 취소 요청·잔여 할부 지급 거절 가능...금감원, 소비자 정보 발령

회사원 A씨는 직장 근처 피트니스클럽 이용권을 3개월 할부로 구입해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한달 여가 지난 뒤 피트니스클럽이 경영난으로 휴업에 들어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카드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A씨처럼 최근 신용카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부 구매하고 나서 판매업자가 계약을 불이행해 할부금 결제중지(지급거절)를 요구하는 민원이 늘자 소비자정보를 발령했다.

또 A씨 같은 경우 할부거래 관련 '청약철회권', '항변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청약철회권은 신용카드 할부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후 7일 이내 거래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항변권은 할부계약기간에 잔여 할부

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청약철회권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거래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항변권은 재화·서비스 등이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다.

두 권리를 행사하려면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일시불로 결제했거나 할부기간이 지난 경우, 3개월 미만 할부 결제의 경우에는 철회·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오충주 금감원 금융민원조정실장은 "할부 결제후 판매업자(카드 가맹점)의 휴·폐업으로 상품 인도 지체, 약정한 서비스 미제공 등의 피해가 예상되면 신속한 청약철회·항변권 행사를 통해 피해금액의 확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서비스의 제공기간이 장기이거나, 거래처의 계약이행능력 및 신용 등이 의심

러운 경우에는 카드 구매시 일시불 보다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이용하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다만, 할부 결제는 회원별 이용실적 및 신용도 등에 따라 할부수수료가 차등 적용되는 만큼 결제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신용카드 할부 거래에 대해 철회·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행위를 위한 거래, 애원권 등 농·수·축산물,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의 거래는 철회·항변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비자의 잘못으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 자동차 처럼 사용에 따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일러 등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설치의 경우에는 할부계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연합뉴스

어르신은 호갱?

<호구+고객>

휴대전화 가입 권유 속임수 속출...고령 소비자 피해 전체 8%

한 70대 남성은 최근 무료로 휴대전화를 교체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바로 2년 약정으로 계약하고 기존 폰도 반납했다. 그런데 이후 확인해보니 약정 기간은 3년이었고 단말기 할부금도 내야 했다. 또 쓰던 휴대전화를 반납할 필요가 없는데도 업자가 받아간 사실도 알게 됐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 소비자 피해도 점점 늘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 계약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 취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1372 소비자상담 센터가 올해 1~7월 접수한 소비자 피해 가운데 60세 이상 소비자가 입은 피해가 7.5%를 차지해 지난해 같은 기간(6.6%)보다 비중

이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60세 이상 소비자 상담 건수 2만34건 가운데 유형별로는 정보통신 서비스에서 발생한 피해가 2872건(14.3%)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휴대전화 계약과 관련한 피해다.

상대적으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아 일어나는 피해가 많다고 연맹 측은 설명했다.

예를 들면 알뜰폰 가입을 권유하면서 어느 통신사 알뜰폰인지 알려주지 않는 식이다.

또 휴대전화 가입을 전화로 권유하면서 단말기가 무료라고 속이거나, 보조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고령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연합뉴스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 홍보지 및 판촉물

● 전단지

● 현수막

● 상패

● 상패

● 전단지

● 각종 인쇄물

● 현수막

● 각종 인쇄물

●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

